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554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김재윤, 송승민, 문지영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12.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0. 선고 2020가단10622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9. 2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26,180,1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1,775,6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1,771,6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 중 원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8. 3. 28.부터 2018. 9. 4.까지 C에게 186,287,222원 상당의 플랜지 부품 등을 납품하였으나, 2018. 6. 22.까지 83,000,000원만을 지급받아,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103,287,222원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6. ‘C은 원고에게 103,287,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8032호)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8. 9. 28. 피고와 C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139,247,845원 상당의 별지1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같은 날 채권양도 통지가 D에게 도달하였다.

다. D의 공탁

D은 2018. 10. 25. 이 사건 채권 139,247,845원 전액을 공탁하고, 2018. 10. 26.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국세채납 압류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공탁금 중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101,775,655원(=139,247,845원 - 37,472,190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103,287,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성립사실이 인정된다.

나. C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18. 9. 28.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은 2019. 11. 23.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C이 제출한 채권자 및 채권액수는 별지2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이 2,382,578,761원에 달한다.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던 채권은 채권 22, 25, 26, 28이고, 그 채권액의

합계는 500,960,785원이며, C이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무렵인 2018. 10. 30.부터 2019. 3. 30.까지 채권자 중 (주)E에게 16,500,000원, 2019. 7.경부터 2019. 10.까지 F에게 6,800,000원을 각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파산면책신청서에 기재된 채무 중 2018. 9. 28. 기준으로 존재하였던 채무는 적어도 10억 원은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C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적극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 내용	가액(원)
1	G에 대한 보험금채권	467,183
2	H에 대한 보험금채권	11,688,610
3	거제시 I 토지	8,847,600
	합계	21,003,393

한편 C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인 2018. 9. 28. 위 표의 순번 3 기재 부동산 이외에 부산 강서구 J 토지 및 건물(이하 'J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과 거제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우선 J 토지 및 건물의 경우 2019. 5. 16.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은 8,663,757,780원이나 2019. 5. 29. 기준으로 2018. 9. 28.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금액의 합은 최소 8,484,528,572원(= L은행의 근저당권 7,940,480,851원 +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 59,519,149원 + M의 가압류 52,528,572원 +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432,000,000원)이고, 그밖에도 설정금액이 미표시된 북부산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가 있어서 2018. 9. 28. 기준으로 잔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K 토지와 위 표의 3번 토지(경남 거제시 I 토지)의 경우 2018년 10월 무렵 그 감정평가액은 각 67,950,000원, 22,484,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2018. 9. 28. 당시 위 두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두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N)에서의 청구금액은 300,000,000원이었으므로, 위 두 부동산 역시 2018. 9. 28. 기준으로 잔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뿐만 아니라 J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2019. 9. 6. 공매가 이루어졌는데, 공매 후 제출된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서에 기재된 채무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억 원이 넘었고,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약 5억 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적극재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O 주식회사 설립하였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2018.

1.경부터 채무지급이 어려워졌고, 이후 2018. 10. 18. O(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또한 위 회사는 2018. 12. 31.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갑 제5호증의 36).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C이 O(주)의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C은 2021. 2. 2. 부산지방법원 2019하단1008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파산절차는 2021. 6. 16. 폐지되었고, 2021. 6. 7. 면책신청 역시 취하되었다).

⑤ 한편 피고는 C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2억 5천만 원 상당의 P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갑 제5호증의 19)에는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C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에 같음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 없고,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① C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아 C의 재산현황을 알 수 없었고, ② O(주)의 규모가 상당하였으며, ③ C이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약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인 채권양수도계약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채권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을 현실로 수급하였다면,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수령한 배당금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집행법원이 배당금을 공탁하여 어떤 이유로든 수익자 등이 이를 출급하지 못한 경우, 수익자 등은 어디까지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데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원래 채권의 변형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여기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채무자를 의미한다)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D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공탁금 중 101,775,655원을 출급하여 이를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49,653,280원{= 103,287,222원 × (1 + 0.05 × 31일/365일 + 0.15 × 108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며, 한편 이 사건 채권액은 139,247,845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그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6,180,197원이 되고, 원상회복으로 취소의 범위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변제받은 101,775,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계약은 126,180,197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1,775,6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홍준서, 판사 권현영, 판사 조윤정

[별지 1]

채권의 표시

채권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청구
채권.

[별지 2]

채권자 목록

순번	채권자명	채권 또는 구입일자	발생 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1		2017.02.10	①	220,000,000	채무연체 외		70,000,000	0
채권2		2016.05.30	②	5,000,000	물품대금		5,000,000	0
채권3		2017.01.31	②	2,653,627	물품대금		2,653,627	0
채권4		2017.02.28	②	23,430,000	물품대금		23,430,000	0
채권5		2017.04.01	②	52,000,000	물품대금		52,000,000	0
채권6		2017.05.31	②	30,000,000	물품대금		30,000,000	0
채권7		2017.08.31	②	16,764,382	물품대금		16,764,382	0
채권8		2017.12.30	②	103,287,222	물품대금		103,287,222	0
채권9		2018.01.30	②	3,898,357	물품대금		3,898,357	0
채권 10		2018.01.31	②	2,530,000	물품대금		2,530,000	0
채권 11		2018.01.31	②	660,000	물품대금		660,000	0
채권 12		2018.01.31	②	2,397,000	물품대금		2,397,000	0
채권 13		2018.01.31	②	2,409,930	물품대금		2,409,930	0
채권 14		2018.01.31	②	3,231,370	물품대금		3,231,370	0
채권 15		2018.01.31	②	3,887,895	물품대금		3,887,895	0
채권 16		2018.01.31	②	1,125,421	물품대금		1,125,421	0
채권 17		2018.01.31	②	11,434,658	물품대금		11,434,658	0
채권 18		2018.02.13	②	602,250	물품대금		602,250	0
채권 19		2018.05.31	②	7,892,159	물품대금		7,892,159	0
채권 20		2018.07.10	②	14,289,170	물품대금		14,289,170	0
채권 21		2018.08.17	②	1,850,000	물품대금		1,850,000	0
채권 22		2018.10.30	②	1,116,500	물품대금		1,116,500	0
채권 23		2018.06.30	②	770,550	물품대금		770,550	0
채권 24		2018.08.31	②	10,641,383	물품대금		10,641,383	0
채권 25		2019.01.20	②	6,613,430	차량구입 [캐시 딜 해각 건]		6,613,430	0
채권 26		2019.07.30	②	55,000,000	물품대금		55,000,000	0

재권 27	유한회사	2012.08.09	㉑	7,463,195,652	보증채무 금(별대각간)	1,095,035,873	11,302,272	
재권 28	신용보증기금	2018.11.22	㉑	438,230,855	보증채무	438,230,855	36,583,575	
재권 29		2015.05.31	㉔	73,500,000	서비스이 용료	73,500,000	0	
재권 30		2017.02.28	㉔	23,638,600	서비스이 용료	23,638,600	0	
재권 31		2017.06.22	㉔	47,243,538	서비스이 용료	47,243,538	0	
재권 32		2018.01.31	㉔	4,675,000	서비스이 용료	4,675,000	0	
재권 33		2018.01.31	㉔	2,530,000	서비스이 용료	2,530,000	0	
재권 34		2018.01.31	㉔	7,613,800	서비스이 용료	7,613,800	0	
재권 35		2018.01.31	㉔	695,200	서비스이 용료	695,200	0	
재권 36		2018.04.30	㉔	1,260,000	서비스이 용료	1,260,000	0	
재권 37		2018.05.31	㉔	1,012,520	서비스이 용료	1,012,520	0	
재권 38		2018.07.30	㉔	16,916,875	서비스이 용료	16,916,875	0	
재권 39		2018.08.30	㉔	10,202,149	서비스이 용료	10,202,149	0	
재권 40	국민연금공단	2017.08.01	㉔	8,403,380	연금보험 료납입	8,403,380	0	
재권 41	국민건강보험 공단	2017.09.10	㉔	22,592,350	건강보험 료	22,592,350	0	
재권 42	북부산세무서	2018.01.31	㉔	131,612,390	부가가치 세금	131,612,390	0	
재권 43	부산광역시 강 서구청	2018.01.02	㉔	16,045,080	지방세	16,045,080	0	
※재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융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험(피보험인 기재), ④기타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2,382,578,761	2,334,692,914	47,885,847

